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. 제26조제7항 단서 중 "수"를 "수 있으며,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"로 한다.

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"를 "조치"로 한다.

제3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38조제2항에 따른 감리결과 위반 및 조치내용의 관련기관 통보

별표 7 제3호가목6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회사가 중요한 취약사항과 관련하여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거나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해당 취 약점 및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별표 8 제3호가목3) 중 "기준금액의 100분의 10과 기본과징금 간의 차액

에 해당하는"을 "기본과징금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10(감사인 및 회사 관계자의 경우 100분의 250)을 차감한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1) 중 "4)" 를 "3)"으로 하며,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감면
 - 가. 별표 7의 제3호나목4)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에서 감면할 수 있다.
 - 나. 별표 7의 제3호나목4)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.
 - 1) 신고자 또는 고지자가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,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
 - 2) 증권선물위원회, 감리집행기관이 신고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
 - 3)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
- 별표 9 제3호다목5)를 6)으로 하고, 같은 목에 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6호가목 경미란 중 2)를 3)으로 하고, 같은 란에 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)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정

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2)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,000억원 미만인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)	제6조(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
	라 회사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
	는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
	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
	<u>할 수 있다.</u>
제26조(조치의 유형) ① ~ ⑥ (생	제26조(조치의 유형) ① ~ ⑥ (현
략)	행과 같음)
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	⑦
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	
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	
해당하는 위법행위(이하 이 조	
에서 "벌칙부과 대상행위"라 한	
다)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	
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	
다. 다만, 위법행위의 동기ㆍ원	,
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	
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	
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	<u>수 있으며,</u>
	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
	분의 신고자등에 해당하는 경우
	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
	<u>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</u>

⑧ (생략) (8) (현행과 같음) 제38조(위법행위의 공시 등) ① 제38조(위법행위의 공시 등)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 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경고 이하의 조치 ---. <u>조치</u>-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 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39조(업무의 위탁) ① (생 략) 제39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44조 제2항제22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1. ~ 4. (생 략) 5. 제38조제2항에 따른 감리결 <신 설> 과 위반 및 조치내용의 관련 기관 통보 [별표 7] 조치등의 기준(제27조제 | [별표 7] 조치등의 기준(제27조제 2항 관련) 2항 관련) 1. •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조치등의 가중 · 감경 및 면제 3. -----가. 가중사유 가. ----

- 1) ~ 5) (생 략)
- 6)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 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<단서 신설>

7) (생 략) 나. · 다. (생 략)

4. • 5. (생략)

제1항 관련)

- 1. 2. (생략)
- 3.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. 가중 사유 및 가중 규모
 - 1) 2) (생 략)
 - 3) 위법행위 내용의 중요도가 "상"인 경우에 기준금액의 100분의 10과 기본과징금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할 수 있는

	1) ~	5)	(현행과	같음)
--	------	----	------	-----

다만, 회사가 중요한 취약 사항과 관련하여 감리를 실 시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거나, 내부회계관 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해당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.

7) (현행과 같음)

나. • 다. (현행과 같음)
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8] 과징금 부과기준(제43조 | [별표 8] 과징금 부과기준(제43조 제1항 관련)

- 1. 2. (현행과 같음)

フト. -----

- 1) 2) (현행과 같음)
- 3) -----

----- 기본과징금 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(감사인 및 회사관계자의 경우 100분의 250)을 차감한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.

4) (생략)

- 나.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유 및 감경 규모
 - 1) 별표 7의 제3호나목1)부터 4)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 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 경할 수 있다.
 - 2) · 3) (생략)
- 4. (생략)

•
4) (현행과 같음)
나
1)
<u>3)</u>

- 2) · 3) (현행과 같음)
- 4. (현행과 같음)
- 5.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감면 가. 별표 7의 제3호나목4)에 해 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 정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결정금 액에서 감경할 수 있다.
 - 나. 별표 7의 제3호나목4)에 해 당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징 금 부과 결정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.

니하였고, 다른 관련자들에 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 을 것 2) 증권선물위원회, 감리집행 기관이 신고 위반행위에 관 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 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

1) 신고자 또는 고지자가 신

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

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

3)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 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 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

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

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

거나 고지하였을 것

[별표 9] 과태료 부과기준(제43조 | [별표 9] 과태료 부과기준(제43조 제2항 관련)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가. •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
- 1) ~ 4) (현행과 같음)
- 5)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회 사를 감사한 감사인에 대하

- 제2항 관련)
- 1. 2. (생략)
- 3.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가. · 나. (생 략) 다. 감경사유
 - 1) ~ 4) (생 략)

<신 설>

5) (생략)

- 4. 5. (생략)
- 6.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등 6. 위반으로 인한 세부기준 가.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중 대	보통			경미	
제 2 호 나 목 1)	제 2 호 나 목 2)	1) (생 <u><신</u> 2) (생	략) 설> 략)		

나. (생략)

<u>여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</u> <u>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</u>

6) (현행 5)와 같음)

4.·5. (현행과 같음)

j.	
	7}
	.

중 대	보통	경미
제 2 호 나 목 1)	제 2 호 나 목 2)	1) (현행과 같음) 2)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,000억원 미만인 경우 3) (현행 2)와 같음)

나. (현행과 같음)